

주요 업무 사례

특별성과급이 임금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특별성과급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5094757)

원고들은 S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도 특별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들로써, 특별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고 특별성과급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S회사에 대하여 특별성과급이 반영된 퇴직금 및 2018년도 특별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노동그룹은 S회사를 대리하여, 특별성과급의 지급이 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고, 특별성과급은 개별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정적·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제공과 무관하며, S회사에게 특별성과급의 지급의무가 있다거나 노사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특별성과급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협약자치원칙에 따라 유효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종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성과급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정해진 재직자 조건이 위법하다거나 현저히 합리성, 정당성을 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